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85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유영하 · 이양수 · 김대식
김상훈 · 김재섭 · 윤한홍
박충권 · 우재준 · 서천호
조지연 · 구자근 · 권영세
조정훈 · 배준영 · 박성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보상과 예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서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

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손자녀(제1항제3호 단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을 포함한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자녀대 1명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손자녀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 본문 중 “손자녀”를 “손자녀(제5조제1항제3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u> <u>최초로 등록한 손자녀(제1항</u> <u>제3호 단서의 독립유공자와</u> <u>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을</u> <u>포함한다)가 사망한 이후에는</u> <u>그의 자녀대 1명</u>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u>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u>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 다만,</u> <u>손자녀 또는 제5조제1항제3의2</u> <u>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u> <u>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u> <u>지급한다.</u> <u><삭 제></u>

<u>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u>	
<u>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u>	<u><삭 제></u>
<u>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u>	
<u>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취업지원) ① (생략)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단서 신설></u>	② ----- ----- -----. <u>다만, 제5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u><단서</u>	제17조(의료지원) ① ----- ----- -----. <u>다만,</u>

신설>

② ~ ⑧ (생략)

제20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illegible]